

● 제315회 ●
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(의안번호 : 265)

2022. 11. 21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유만희 의원 대표발의】

의안번호 265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경위

가. 제안자 : 유만희 의원 외 21명

나. 제안일자 : 2022년 10월 14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국가보훈처는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후손 중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및 기초연금수급자에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음. (22. 8월 현재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을 받는 서울시 거주자 3,773명)
- 반면, 서울시는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의 가구에만 독립유공생활지원 수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, 국가보훈처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- 서울시의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급대상을 기초연금수급자까지 확대 하여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원대상을 현행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인 사람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인 사람 및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”로 함 (안 제3조제1항제5호나목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지향)

1 개정안의 취지

- 동 개정안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의 독립유공자 후손 가구에만 지급되던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기초연금 수급자에게까지 확대지급함으로써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음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개정안의 제안배경
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¹⁾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의미함.
- 또한 동 법률 제14조의5²⁾에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가운데 제12조³⁾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 중

1)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적용 대상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1. 순국선열: 일제의 국권침탈(國權侵奪)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, 그 공로로 건국훈장(建國勳章)·건국포장(建國褒章)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

2. 애국지사: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, 그 공로로 건국훈장·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

2)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5(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)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 신청절차 및 지원금 수급권 확인·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3)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보상금) ① 보상금은 월액(月額)으로 지급한다.

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(先順位者)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,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.

1.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

2.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

가.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

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-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의 (손)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준중위소득 70%이하,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각각 생활지원금⁴⁾을 지원하고 있음.

나.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

-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(손)자녀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을 지급해오고 있었으나, 이 기준이 국가보훈처의 기준과 상이 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음.
-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를 의미함.
-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만 65세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의미하며, 22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 음.

나.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

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.

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

1.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,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.
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

1. 사망한 경우

2.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3. 삭제 <2015. 12. 22.>

4.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

⑥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「통계법」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(家口)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.

4) 기초생활수급자, 생활조정수당대상자 478천원,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, 기초연금수급자 345천원

〈표〉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

구 분	단독가구	부부가구
선정기준액	1,800,000원	2,880,000원

- ‘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으며, 이에 따르면 ‘22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약 중위소득 90%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음.

〈표〉 2022년 기준 중위소득

(단위: 원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기준중위소득	1,944,812	3,260,085	4,194,701	5,121,080	6,024,515	6,907,004	7,780,592
중위소득 70%	1,361,368	2,282,060	2,936,291	3,584,756	4,217,161	4,834,902	5,446,414
중위소득 90%	1,750,331	2,934,077	3,775,231	4,608,972	5,422,064	6,216,303	7,002,533

- 그 동안 서울시 독립유공생활 지원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 가구만을 대상으로 지원해 국가보훈처에서 지원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해왔음.
 - ‘22년 8월 기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상자는 총 3,773명이나, 이 가운데 1,256명은 기초연금수급자로 서울시 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.
- 본 개정안은 그 동안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연금수급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시킴으로써 그 동안 제기되어 온 국가보훈처 생활지원수당 지급대상과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행정의 일관성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

3 종합의견

- 보훈에 대한 보상은 사회보장의 선순위 제도로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해야함.⁵⁾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그 손자녀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음.
- 또한, 국가보훈 기본법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원칙은 국가 책임으로, “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음.⁶⁾
-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·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 특히, 그 동안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연금수급자까지 그 대상이 확대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서울시 독립유공자 생활지원수당 대상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문 의 처

도미화 입법조사관 (02-2180-8147)

5) 황미경(2020). “보훈복지대상자의 보훈급여금과 기초연금의 형평성 연구 : 보상의 원칙과 적절성의 회복”. 한국보훈논총 19(3).

6) 황미경(2020). “보훈복지대상자의 보훈급여금과 기초연금의 형평성 연구 : 보상의 원칙과 적절성의 회복”. 한국보훈논총 19(3).